

『IBK 혁신성장펀드 3호』 혁신성장 매칭사업 선정계획 공고

「IBK 혁신성장펀드 3호」 혁신성장 매칭사업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정개요

구분	세부내용									
위탁운용 금액 및 선정 운용사수	○ 「IBK 혁신성장펀드 3호」 : 900억원 이내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분야</th> <th>선정 운용사 수</th> <th>출자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혁신산업 소형</td> <td>2개사 이내</td> <td>150억원 이내</td> </tr> <tr> <td>혁신산업 중형</td> <td>2개사 이내</td> <td>300억원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분야	선정 운용사 수	출자금액	혁신산업 소형	2개사 이내	150억원 이내	혁신산업 중형	2개사 이내	300억원 이내
	분야	선정 운용사 수	출자금액							
혁신산업 소형	2개사 이내	150억원 이내								
혁신산업 중형	2개사 이내	300억원 이내								
※ 내부 심사기준 미달 시 선정 운용사 수 축소 가능										
운용사 신청자격	○ 2025년 「혁신성장펀드(혁신산업펀드)」 중·소형 분야 선정 운용사									
출자대상 투자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창업·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○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									
	※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·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투자기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간 협의를 통하여 펀드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									
운용사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정계획 공고를 통해 출자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 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※ 한국성장금융 : www.kgrowth.or.kr (출자사업공고) ○ IBK기업은행과의 과거 협업 사례 및 구체적 협업 방안, 투·융자 복합지원 연계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여 운용사 선정에 반영 									
접수일시	○ 2025년 「혁신성장펀드(혁신산업펀드)」 중·소형 분야 선정 운용사 대상으로 개별 안내									
심사결과 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5년 8월 이내 * 제안서 접수 상황, 평가 진행상황 및 외부 사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									
펀드 결성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5년 12월 31일 * Multi Closing은 '26.3월말 이내로 허용(해외출자자에 한하여 '26.12월말까지 허용) 									

2. 주요 출자조건

구분	세부내용	
주 목 적 투자비율	□ (소형,중형) ①,②의 주목적 투자비율 준수(별첨자료 참조)	
	주목적 투자	의무 투자비율
	①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영위 중소·중견기업	목표결성액 ^{주)} 의 60% 초과결성액 ^{주)} 의 40%
	② 新성장 4.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영위 중소·중견기업	목표결성액 ^{주)} 의 50% 초과결성액 ^{주)} 의 30%
	주) 「혁신성장펀드(혁신산업펀드)」 2025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문 상 용어 정의와 동일	
출자비율	○ 「혁신성장펀드(혁신산업펀드)」 중·소형 분야 각각 펀드별 목표결성금액 ^{주)} 의 최대 30% 이내 주) 「혁신성장펀드(혁신산업펀드)」 2025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문 상 용어 정의와 동일	
운용사 출자비율	○ 약정총액의 [2%] 이상* *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,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* 소속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	
존속기간	○ 펀드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(1년씩 2회 연장가능)	
투자기간	○ 펀드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	
납입방식	○ 수시납(Capital call) 또는 분할납	
운용보수	○ 관리보수 : ① 또는 ② 중 택일 -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*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아래 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이내에서 협의 가능	
	관리보수 지급 기준	
	① 2년간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 기준, 이후 투자잔액 기준 - (성립일~2년) 투자잔액 및 "약정총액-투자잔액" 기준 - (2년 ~ 만기) 투자잔액 기준	
	구 분	≤1,000억원 ≤2,000억원 ≤3,000억원 3,000억원 <
	투자잔액 (약정총액-투자잔액)	연1.8% 이내 연1.3% 이내 연0.6% 이내 연0.5%이내 연1.4% 이내 연0.9% 이내
	② 2년간 약정총액, 이후 투자잔액 기준 - (성립일~2년) 약정총액 기준 - (2년 ~ 만기) 투자잔액 기준	
구 분	≤1,000억원 ≤2,000억원 ≤3,000억원 3,000억원 <	
성립일~2년 2년~ 만기	연1.5% 이내 연1.0% 이내 연0.6% 이내 연0.5%이내	

구분	세부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보수 :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% 이내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Catch-up 구조 선택 가능 * 단, 아래 보수 범위 이내로, 타 출자자 출자조건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준수익률 : 9% 이상 제안 ▪ 성과보수 : 기준수익률 초과시 누적이익의 20%, Catch-up 40% 이내 </div>
운용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, 운용인력의 경력,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○ 자격요건 : 투자경력 3년 이상 또는 주목적 투자대상 관련 산업경력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투자경력 및 산업경력 산정 기준은 「혁신성장펀드(혁신산업펀드)」 2025년과 동일 ○ 핵심운용인력(대표펀드매니저 포함)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*를 초과할 수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투자기간이 경과하였거나, 약정총액의 60% 이상 투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 ○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(규약)에 기재
출자자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개인출자자(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), 타 집합투자기구(사모투자신탁 등), 해외출자자 등의 출자가 책임 운용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성장금융과 협의하여 결정
수탁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
회계감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
펀드 전자보고 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○ 펀드 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출자금액, 보수, 인센티브 등)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임 ○ 운용사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병행펀드(Parallel 펀드) 구조로 제안 가능하며, 이 경우 병행펀드와 본건 제안펀드를 합산하여 출자비율 등을 산정

구분	세부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부 운용조건은 병행펀드와 동일하거나 유리한 조건이어야 함 - 병행펀드의 결성일은 제안펀드의 결성일보다 늦을 수 없음 ※ 다만 선정 후 결성 과정에서 병행펀드 구조를 희망하는 경우, 세부 운용조건, 결성일 등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하여야 함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, 결성 과정에서 지원분야별 주관기관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

3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(미해소),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
 - 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주의
 - 2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을 제외한 펀드운용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경고·시정명령·업무정지
- ※ 다만,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제안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 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(직원인 경우) 또는 문책경고(임원인 경우)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

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목표 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을 말함)에 미달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)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※ 선정 취소 발생 시,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

4. 제재 사항 및 기타

□ 제재 사항

- 결성시한(협약에 의한 연장기한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(정관)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
-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
 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
- 선정된 운용사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, 고의적·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
□ 기 타

-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
-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접수일 직전 분기말(**25.3.31**)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
5. 선정절차 및 일정

□ 선정 절차

-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예비심사 → 현장실사 → 제안(구술)심사 → 최종선정

□ 문의방법 :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반드시 아래 이메일을 통해 협의
(문의사항 집계, FAQ 작성 등을 위해 유선 문의 최소화 요망)

-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1팀 (02-2090-9188, innovone@kgrowth.or.kr)

2025년 6월 11일

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